

## 2019년 단체협약 갱신/개정요구(안)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<b>단체 협약</b>	<p><b>제 3 조(조합원의 범위)</b> ①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팀장 이상의 직책에 보직된 직원(파트장 제외)</li> <li>2. 삭 제 (2015.11.16)</li> <li>3. 청원경찰</li> <li>4. 안보, 군 및 경호통신업무 담당직원</li> <li>5. 인사, 노무, 회계·경리(단순한 요금수납 관리업무요원 제외),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담당직원</li> </ol> <p style="color: red;">—6.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. 상무보급 이상의 비서·<del>승용차</del>·<del>운전원</del></li> <li>8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</li> </ol> <p>② 조합원이 제 1 항 단서 각호의 1 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 종사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해당업무 종료 시 원소속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회복한다.</p>	<p><b>제 3 조(조합원의 범위)</b> ①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팀장 이상의 직책에 보직된 직원(파트장 제외)</li> <li>2. 삭 제 (2015.11.16)</li> <li>3. 청원경찰</li> <li>4. 안보, 군 및 경호통신업무 담당직원</li> <li>5. 인사, 노무, 회계·경리(단순한 요금수납 관리업무요원 제외),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담당직원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. 상무보급 이상의 비서</li> <li>7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</li> </ol> <p>② 조합원이 제 1 항 단서 각호의 1 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 종사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해당업무 종료 시 원소속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회복한다.</p>	(문구삭제) 사문화조항 삭제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단체 협약	제 4 조(조합가입) 본 협약 체결(1988.11.8)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 3 조 제 1 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.	제 4 조(조합가입) 본 협약 체결(1988.11.8)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 3 조 제 1 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. 단, 구 KTF 입사자의 경우 2003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직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.	(문구추가)  KTF유니온 흡반영
	제 24 조(인사원칙)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시키지 아니하며 해임, 감봉, 견책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. ② 회사는 조합원을 직군에 맞게 복무배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.  ③ 본 협약에 정함이 없는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관계 규정에 의한다.	제 24 조(인사원칙)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시키지 아니하며 해임, 감봉, 견책, 정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. ② 회사는 조합원을 직군에 맞게 복무배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 회사는 일정연도의 근속을 기준하여 조합원의 직위를 승진시켜야 한다. ④ 본 협약에 정함이 없는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관계 규정에 의한다.	현행화  근속승진
	제 31 조(명예퇴직) 삭제 (2015.11.16)	제 31 조(희망퇴직) ① 희망퇴직의 대상은 정년퇴직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희망퇴직을 시킬 수 있다. 1. 임금피크제 최초 도래직원 2.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 ② 희망퇴직은 매분기 시행한다.	(문구추가) 합의사항 반영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	<p><b>제 40 조(부당공제의 금지)</b>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공과금</li> <li>2. 노동 조합비</li> <li>3. 건강 보험료</li> <li>4. 국민 연금</li> <li>5. 개인 연금(연금저축 포함)</li> <li>6. 고용 보험료</li> <li>7. 주택자금 대부금(생활안정 및 긴급가계자금 대부금 포함) 및 상환 학자금 대부금</li> <li>8. 조합원이 공제를 위임한 사항</li> <li>9. 기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</li> </ol>	<p><b>제 40 조(부당공제의 금지)</b>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공과금</li> <li>2. 노동 조합비</li> <li>3. 건강 보험료</li> <li>4. 국민 연금</li> <li>5. 개인 연금(연금저축 포함)</li> <li>6. 고용 보험료</li> <li>7. 주택자금 대부금(가계안정자금 대부금 포함) 및 상환 학자금 대부금</li> <li>8. 조합원이 공제를 위임한 사항</li> <li>9. 기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</li> </ol>	<p>(문구변경)</p> <p>명칭변경</p>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	<p><b>제 45 조(평균임금)</b>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 <p>1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 [기준연봉(기준급, 역량급, 역할급, 직책급), 초과근무수당, 가산금(초과가산금, 휴일가산금)]을 3 등분한 금액</p> <p>2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 년 분의 성과급, 연차휴가보상 수당을 12 등분한 금액</p>	<p><b>제 45 조(평균임금)</b>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 <p>1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 [기준연봉(기준급, 역량급, 역할급, 직책급), 초과근무수당, 가산금(초과가산금, 휴일가산금), <b>급식통근보조비</b> ]을 3 등분한 금액</p> <p>2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 년 분의 성과급, 연차휴가보상 수당을 12 등분한 금액</p>	<p>(문구변경) 퇴직금 범 위 확대</p>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	<p><b>제 49 조(명예퇴직금) 삭 제</b> (2015.11.16)</p>	<p><b>제 49 조(희망퇴직)</b> 희망퇴직시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금을 보상한다.</p> <p>① 산식 : (월 기준급+월 역량급)*산정월수*지급율</p> <p>- 산정월수 기준 :</p> <p>. 정년퇴직 5년 이내 : 잔여월수 매 2월당 1개월</p> <p>. 정년퇴직 5년초과~10년 :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</p> <p>② 장애 3급이상 판정으로 인한 공상자가 희망퇴직시 기 합의한 보상금(1.5억)으로 희망퇴직금을 같음한다.</p>	<p>(문구추가) 합의사항 반영</p>
	<p><b>제 53 조(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)</b> ①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(제 52 조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), 야간근로(하오 10 시 부터 상오 6 시까지 사이의 근로)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과 지급률 등 세부사항을 임금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<del>①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무일(토요일)에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래의 휴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.</del></p>	<p><b>제 53 조(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)</b> ①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(제 52 조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), 야간근로(하오 10 시 부터 상오 6 시까지 사이의 근로)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과 지급률 등 세부사항을 임금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.</p>	<p>(문구삭제) 대체휴무폐 지</p>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	<p><b>제 62 조(휴가)</b>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 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차휴가</li> <li>2. 공가</li> <li>3. 병가</li> <li>4. 공상휴가</li> <li>5. 청원휴가</li> <li>6. 포상휴가</li> <li>7. 특별휴가</li> <li>8. 안식년휴가</li> </ol> <p>② 제 1 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차휴가 :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 일의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1 년 미만 근로자 또는 8 할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월간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<del>1 년을 초과 2 년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5 일에서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부여한다.</del> 회사는 <del>3 년 이상</del>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. 회사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,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<b>제 62 조(휴가)</b>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 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차휴가</li> <li>2. 공가</li> <li>3. 병가</li> <li>4. 공상휴가</li> <li>5. 청원휴가</li> <li>6. 포상휴가</li> <li>7. 특별휴가</li> <li>8. 안식년휴가</li> </ol> <p>② 제 1 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차휴가 :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 일의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1 년 미만 근로자 또는 8 할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월간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li> </ol> <p>회사는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. 회사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,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(문구변경) (문구추가) 개정법률반영 및 삽입</p> <p>법개정반영</p>

	<p><del>—1의 2(연차휴가의 사용촉진)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—</del></p> <p>1의 3(휴직자 연차휴가 이월) 하반기 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2. 공가 :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.</p> <p>가. 병역검사나 근무·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</p> <p>나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</p> <p>다.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</p> <p>라.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</p> <p>마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</p> <p>3. 병가</p>	<p>1의 2(휴직자 연차휴가 이월) 하반기 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<del>1의 3(공상자 연차휴가 이월) 12월 복귀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del></p> <p>2. 공가 :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.</p> <p>가. 병역검사나 근무·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</p> <p>나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</p> <p>다.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</p> <p>라.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</p> <p>마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</p> <p><b>바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진 : 연 1일</b></p> <p>3. 병가</p> <p>가. 전염병의 이환</p>	<p>연차촉진 폐지</p> <p>공상자 연차이월</p> <p>건강검진</p>
--	---	---	--

<p>가. 전염병의 이환  나.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: 70 일까지</p> <p>4. 공상휴가 :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5. 청원휴가  가. 결혼  (1) 본인 : 7 일  (2) 자녀/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 일 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 일]</p> <p>나. 회갑 또는 칠순  (1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: 1 일</p> <p>다. 사망  (1) 배우자/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/승중상 : 6 일  (2) 자녀/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/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: 5 일  (3)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백숙부모, 형제자매의 배우자:3 일  (4) 삭 제 (2011.5.24)  (5) 삭 제 (2015.11.16)</p>	<p>나.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: 70 일까지</p> <p><b>다. 동일질병에 관계없이 연간 70 일 (12.31 일까지)</b></p> <p>4. 공상휴가 :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5. 청원휴가 (법정휴무일 제외)  가. 결혼  (1) 본인 : 7 일  (2) 자녀/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 일 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 일]</p> <p>나. 회갑 또는 칠순  (1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: 1 일</p> <p>다. 사망  (1) 배우자/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/승중상 : 6 일  (2) 자녀/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/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: 5 일  (3)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백숙부모, 형제자매의 배우자:3 일  (4) 삭 제 (2011.5.24)  (5) 삭 제 (2015.11.16)</p>	<p>병가기준명  확화</p> <p>법정휴일  제외</p>
---	---	--

<p>(6) 본인 또는 배우자 고모, 고모부, 이모, 이모부, 외숙부모: 1 일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 일]</p> <p>라. 탈상</p> <p>(1) 배우자/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/조부모(여직원의 시조부모 포함) : 1 일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 일]</p> <p>마. 출산 및 유산</p> <p>(1) 태아검진 : 월 1 일</p> <p>(2) 배우자 출산 시 : 10 일(출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청/ 유급)</p> <p>(3) 여성조합원의 산전·산후휴가 : 90 일(70 일 초과분은 무급)/ 단, 다태아의 경우 120 일(90 일 초과분은 무급)</p> <p>(4) 임신 28 주 이상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90 일 까지(70 일초과분은 무급)</p> <p>(5) 임신 22 주 이상 27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60 일까지</p> <p>(6) 임신 16 주 이상 21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45 일까지</p> <p>(7) 임신 12 주 이상 15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10 일까지</p> <p>(8) 임신 11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5 일까지</p>	<p>(6) 본인 또는 배우자 고모, 고모부, 이모, 이모부, 외숙부모: 1 일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 일]</p> <p>라. 탈상</p> <p>(1)배우자/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/조부모 (여직원의 시조부모 포함) : 1 일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 일]</p> <p>마. 출산 및 유산</p> <p>(1) 태아검진 : 월 1 일</p> <p>(2) 배우자 출산 시 : 10 일(출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청/ 유급)</p> <p>(3) 여성조합원의 산전·산후휴가 : 90 일(70 일 초과분은 무급)/ 단, 다태아의 경우 120 일(90 일 초과분은 무급)</p> <p>(4) 임신 28 주 이상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90 일 까지(70 일초과분은 무급)</p> <p>(5) 임신 22 주 이상 27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60 일까지</p> <p>(6) 임신 16 주 이상 21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45 일까지</p> <p>(7) 임신 12 주 이상 15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10 일까지</p> <p>(8) 임신 11 주 이내의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: 5 일까지</p>	
--	---	--

	<p>바. 재해</p> <p>(1) 수재, 화재 등 중대재해 : 3 일</p> <p>6. 포상휴가 : 7 일 이내</p> <p>7. 특별휴가 :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 월전부터 퇴직 시 까지 3 월 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8. 안식년휴가 : 조합원이 근속 10 년, 20 년, 30 년 도래시 다음 각목의 휴가를 부여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회사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10 년 도래시 : 5 일</p> <p>나. 20 년 도래시 : 8 일</p>	<p>바. 재해</p> <p>(1) 수재, 화재 등 중대재해 : 3 일</p> <p>6. 포상휴가 : 7 일 이내</p> <p>7. 특별휴가 :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 월전부터 퇴직 시 까지 3 월 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</p> <p>8. 안식년휴가 : 조합원이 근속 10 년, 20 년, 30 년 도래시 다음 각목의 휴가를 부여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회사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10 년 도래시 : 5 일</p> <p>나. 20 년 도래시 : 8 일</p>	<p>강제</p>
--	---	--	-----------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	<p><b>제 81 조(자녀 학비 지원)</b>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취학 자녀에게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의 학비를 지원한다. 지원기간은 당해 조합원이 정년 퇴직 했을 시점까지로 한다. <del>단, 대학학자금의 경우 2014.6.1 이전에 순직 또는 공상 퇴직한 조합원에 한하여 지원한다.</del></p>	<p><b>제 81 조(자녀 학비 지원)</b>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취학 자녀에게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의 학비를 지원한다. 지원기간은 당해 조합원이 정년 퇴직 했을 시점까지로 한다.</p>	(문구추가) 합의사항 반영
	<p><b>제 112 조(정년 및 재고용)</b> ① 직원의 정년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만 60 세로 하며, 정년 퇴직시점은 매월 단위로 산정한다.</p> <p>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기 도입된 '정년퇴직 후 재고용'제도를 시행하여 회사의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토록 하며, 재고용규모 및 기간, 근로조건 등은 노사간 별도로 정한다.</p>	<p><b>제 112 조(정년 및 재고용)</b>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5 세로 하며, 정년 퇴직시점은 반기 단위로 산정한다.</p> <p>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기 도입된 '시니어컨설턴트'제도를 시행하여 회사의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토록 하며, 재고용규모 및 기간, 근로조건 등은 노사간 별도로 정한다.</p>	정년연장  문구수정